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42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의 주요 업무는 능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상·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시설형)
- 위치 :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
 - 보유물품 : 181종 602개(소프트웨어 및 리스물품 포함)
 - 보유자료 : DVD 2,574편, 서적 4,375편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편집실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

다. 위탁사무내용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3년(2020.1.1.~2022.12.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14백만원('19년 예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 이영민 (☎ 2133-5235)